



# 전기관리 설비의 자체 보안체제

출처\_전기관리기술자 실무(출판사: 성안당 www.cyber.co.kr)

## Contents

- 1. 자가용 수변전설비의 자주 보안체제      3. 자가용 수변전설비의 예방보전      5. 자가용 수변전설비 보수점검의 사전준비
- 2. 전기주임기술자인 당신의 직무      4. 자가용 수변전설비의 보수점검의 종류      6. 자가용 수변전설비의 보수점검 방법

※ 본 자료는 일본 Ohmsha 자료를 근간하여 국내 출판사가 번역한 자료입니다.

※ 본 자료의 내용은 현재의 제도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전기안전관리제도와 실무의 변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〈자체 보안체제〉	자 가 용 전 기 설 비 의 보 안 체 제	〈정부의 직접감독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적합·유지의무 - 전기설비를 전기설비 기술 기준대로 적합시켜 유지할 의무</li> <li>• 전기 주임기술자의 선임 - 전기설비 보안을 감독시키기 위해 전기 주임기술자를 선임하고 계속할 의무</li> <li>• 보안규정의 작성 준수 - 전기설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정하여 신고하고 준수할 의무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사계획의 인가, 계출</li> <li>• 검사 - 사용전 검사, 입회 검사 등</li> <li>• 사용 개시 계층</li> <li>• 전기사고 그밖의 보고의무</li> <li>•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 명령</li> <li>• 보안 규정 개선 명령</li> </ul>



전기주임기술자의 선임유출기종류와 감독범위		
	〈주임기술자의 선임 신고의 종류〉	〈주임기술자의 면허와 감독 범위〉
선 임	(a) 주임기술자의 선임 신고 - 주임기술자 면허의 교부를 받고 있는자를 선임한다.	(a) 제1종 전기 주임기술자 면허 -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용
	(b) 주임기술자의 선임 허가신청 - 통상산업대신의 허가를 받고 주임기술자 면허의 교부를 받지 않은자를 선임한다.	(b) 제2종 전기 주임기술자 면허 - 구내에 설치하는 전압 170kV 미만인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, 운용 - 구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전압 100kV 미만의 공사, 유지, 운용
	(c) 주임기술자의 겸임 승인신청 - 특별한 이유로써 통상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 2개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겸하여 선임한다.	(b) 제3종 전기 주임기술자 면허 - 구내에 설치하는 전압 50kV 미만인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, 운용 - 구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전압 25kV 미만인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, 운용
위 임	(d) 주임기술자 불선임 승인신청 - 전기보안협회 또는 조건을 구비한 보안업무 전용의 전기 관리기술자에게 위탁한다.	